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공식사회의 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1 과제 선정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민원, 제안 등)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등을 분석

2 문제점 조사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합니다.

3 개선방안 마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4 의견수렴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5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기한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6 이행점검

권고한 사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제도개선 권고내용 확인방법

- 인터넷: www.acrc.go.kr(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접속 ▶ 정책홍보 ▶ 제도개선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을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 전화·문자상담: 국번없이 110
- 화상수화·채팅상담: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콜센터")
- SNS상담: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 상담 시간: 365일 24시간(화상수화상담 평일 09~18시)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소통 창구입니다.

| 주요특징 |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 참여방법 |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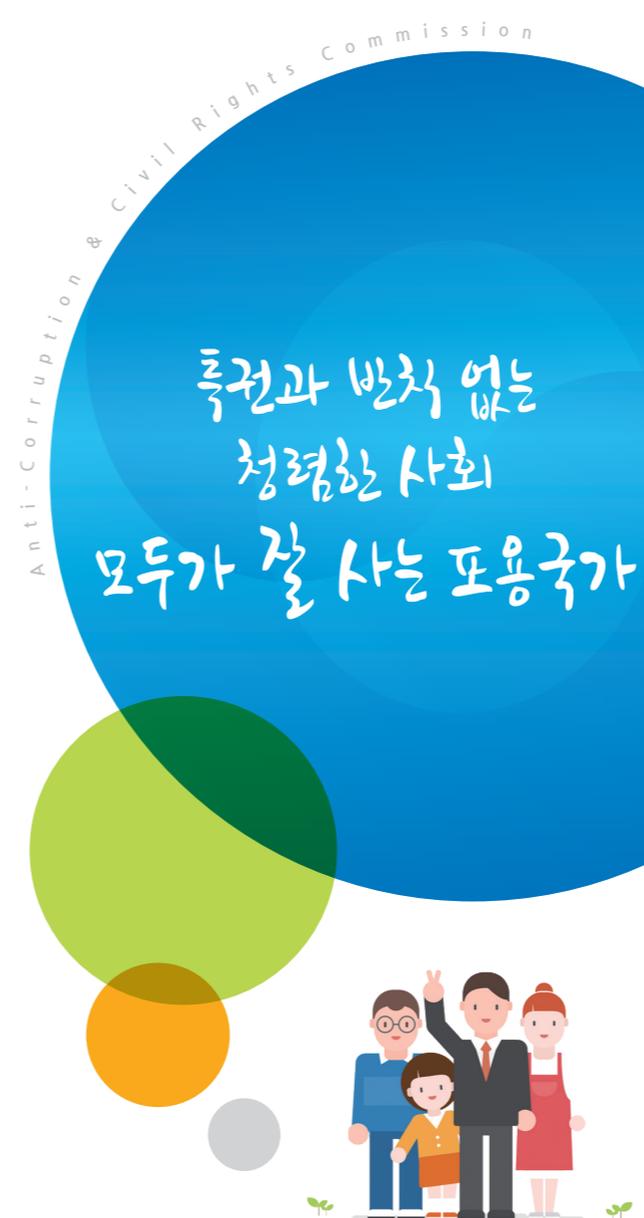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현황판 서비스입니다.

| 민원정보공개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총 45종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각종 분석자료 원문 내려받기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 |

- 개인, 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4종의 데이터를 개방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회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권익위가 하는 일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 조성
심사보호	부패·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
고충처리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국민권익을 구제
제도개선	고충·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권익위 소관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행정심판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2020. 1. 1.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국민·정부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 수립·확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체 등 범정부 협력체계 운영
- 청렴사회민관협의체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 파트너십 활성화

부패영향평가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법령·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채용비리 신고 접수·처리
- 생활속 반칙과 특권 등 반부패 과제 발굴·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견인

-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평가 등 실시
- 청렴도 하위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지원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총괄 운영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및 신고사건 접수·처리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행위기준 운영 (이해충돌방지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갑질'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위반 신고사건 접수·처리,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홍보 등

청렴연수원(www.acrc.go.kr/edu/) 등 청렴 교육·문화 확산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사이버교육과정(www.acti.nhi.go.kr) 운영
- 청렴콘서트 등 청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 참여 청렴프로그램 운영
- 한국의 우수 반부패정책에 대한 기술지원, 홍보 등 국제사회 협력

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신고방법

- 인터넷 : www.dean.go.kr(청렴포털),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 앱 : 국민신문고 앱
- 전화상담 : 110, 1398(일상고발)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부패·공익신고”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신고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위법한 예산낭비행위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운영 ('20.1.1. 시행)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인터넷 : www.dean.go.kr(청렴포털),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 앱 : 국민신문고 앱(“부패·공익신고”)
- 전화상담 : 110, 1398(일상고발)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포상

-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을 받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현장조정

다수인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 간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 해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음부즈만) 설치·운영 지원

고충민원 신청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법인·단체 등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 앱 : 국민신문고 앱(“민원신청”)
- 전화상담 : ☎ 110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팩스 : 044-200-7971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원회는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인용 재결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에 해당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음

행정심판 진행 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인: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답변서 제출·송부**
 -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10일 이내)
 -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부
- 검토 및 안건상정**
 -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개최**
 - 심리 및 재결
- 재결서 송달**
 - 재결일로부터 2~3주 이내 송달

행정심판 청구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 청구서 작성 ▶ 증거서류 첨부 ▶ 청구 완료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전화상담 : ☎ 110